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기업소득세 정책을 완전하게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

재세 [2014] 7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위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정책취지의 완전한 개선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과 관련된 기업소득세 정책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생물약품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철로, 선박, 항공우주 및 기타 운수설비 제조업, 컴퓨터, 통신과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측정기기 제조업,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통신기술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의 기업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상술한 6개 업종의 소형·저이윤 기업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연구개발 및 생산경영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측정기기 및 설비는 단위가치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기 원가비용에 1회 산입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출할 때 공제를 허용하고, 연도별 감가상각을 재차 계상하지 아니하며, 단위가치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2. 모든 업종의 기업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연구개발 전용 측정기기 및 설비는 단위가치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기 원가비용에 1회 산입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출할 때 공제를 허용하고, 연도별 감가상각을 재차 계상하지 아니하며, 단위가치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关于完善固定资产加速折旧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

财税[2014]75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贯彻落实国务院完善固定资产加速折旧政策精神,现就有关固定资产加速折旧企业所得税政策问题通知如下:

一、对生物药品制造业,专用设备制造业,铁路、船舶、航空航天和其他运输设备制造业,计算机、通信和其他电子设备制造业,仪器仪表制造业,信息传输、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等6个行业的企业2014年1月1日后新购进的固定资产,可缩短折旧年限或采取加速折旧的方法。

对上述6个行业的小型微利企业2014年1月1日后新购进的研发和生产经营共用的仪器、设备,单位价值不超过100万元的,允许一次性计入当期成本费用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不再分年度计算折旧;单位价值超过100万元的,可缩短折旧年限或采取加速折旧的方法。

二、对所有行业企业2014年1月1日后新购进的专门用于研发的仪器、设备,单位价值不超过100万元的,允许一次性计入当期成本费用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不再分年度计算折旧;单位价值超过100万元的,可缩短折旧年限或采取加速折旧的方法。

三、对所有行业企业持有的单位价值不超过5000元的固定资产,允许一次性计入当期成本费用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不再分年度计算折旧。

四、企业按本通知第一条、第二条规定缩短折旧年限的,最低折旧年限不得低于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六十条规定折旧年限的60%;采取加速折旧方法的,可采取双倍余额递减法或

채택할 수 있다.

3. 모든 업종의 기업이 보유하는 단위가치가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은 당기 원가비용에 1회 산입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출할 때 공제를 허용하고, 연도별 감가상각을 재차 계상하지 아니한다.

4. 기업이 본 통지 제1조, 제2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하는 경우, 최저 감가상각연한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0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연한의 60%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고;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이중채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채택할 수 있다. 본 통지는 제1조에서 제3조 규정 이외의 기업에 대한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 소득세 처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현행 세수정책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본 통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者年数总和法。本通知第一至三条规定之外的企业固定资产加速折旧所得税处理问题，继续按照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和现行税收政策规定执行。

五、本通知自2014年1月1日起执行。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4年10月20日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4년 10월 20일